

UR協定關聯 用語解說

〈A〉

1) Ad Valorem Duties(從價稅)

物品의 價格, 즉 輸入價格을 基準으로 부과하는 關稅

2) Amber Box(減縮對象 農業補助)

農業補助金중 許容補助金(Green Box)을 제외한 모든 補助金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우루과이아운드 履行期間內에 一定目標水準을 減縮하도록 되어 있음.

3) Anti-Dumping Duty(덤핑關稅)

正常的인 價格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말미암아 國內產業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혹은 國內產業의 設立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 이를 防止하고 公正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덤픽輸入品에 부과하는 特別關稅를 지칭함.

〈B〉

4) Bilateral Negotiation(雙務協商)

UR協商처럼 여러국가들이 동시에 協商하는 多者間協商과는 달리 이해 관련 당사국 두 나라가 별이는 通商協商을 말함.

5) Binding(讓許 또는 据置)

→ Tariff Concession(關稅讓許 참조)

6) Blair House Accord(블레이어하우스協定)

UR協商의 최대쟁점의 하나. 미국의 EC가 92.11백악관 Blair House에 모여 UR農產物協定 草案中 보조금감축 등에 대한 수정을 합의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① 輸出補助金 減縮物量을 24%에서 21%로 낮추고 ② 國內補助金에 대해 生產統制下의 直接補助許容 ③ 國內補助金에 대한 AMS산정시 품목간 減縮融通性 認定 ④ 유지작물의 경우 15% 휴경

에 따르는 直接補助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등임. 프랑스는 동 合意內容이 92. 5共同農產政策改革案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여 왔고 93. 12 美國, EC간 再合意에 이르게 됨. 재합의된 主要內容은 ① 在庫穀物을 UR協定이 발효되는 시점까지 輸出補助金削減對象에서 제외 ② 輸出補助金 削減基準年度를 당초 86~90년에서 91~92년으로 전환하는 것등임.

7) Blue Print(블루프린트 또는 金融自由化履行計劃書)

우리 정부가 金融產業의 自律化, 國際化를 통해 낙후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한 金融自由化 計劃案으로 9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93년 6월 제3단계 計劃案이 마련되었음.

○ 第1段階(92~93년시행:'92. 4작성): 讓渡性預金 발행조건 완화, Call금리 만기 다양화등 현 경제여건내에서 부작용 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

○ 第2段階(94~96년시행:'92.6작성): 店外無人入出金機(ATM)설치, 外國證券社 追加支店設置,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등

○ 第3段階(93년부터 97년이후:'93. 6 말 작성 예정): 金利自由化, 외국인 채권투자, 상업차관도입 허용등

8) BOP Article(Balance of Payment Article: 國際收支保護條項)

國際收支를 이유로 數量制限을 許容하고 있는 GATT의 條項, 先進國의 경우 第12條, 開途國의 경우 第18條B項에根據하여 國際收支를 이유로 한 數量制限措置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開途國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1989년 10월에 第18條B항을 卒業한 바 있음.

9) Border Protection(國境保護)

현재 UR農產物協商에서 國內補助・輸出競爭과 함께 三大課題로 다루어지고 있는 國境保護는 國際交易에 있어서 關稅 및 모든 非關稅措置등 자유로운 국경통과를 制限하고 있는 일체의 輸入制度를 의미하고 있음.

10) Bounded Tariffs(讓許關稅)

多者間 協商過程을 통해 國際的으로 公認된 關稅, 일단 關稅를 讓許하면 그 以下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以上的 關稅賦課를 할 수 없게 됨. 不可避하게 讓許關稅를 올리려 할 경우 該當品目의 主要輸出國의 諒解가 필요하며 이 때 兩國間에 이에 相應하는 報償手段등이 論議됨.

(C)

11) Cairns Group(農產物 非補助 輸出國)

農產物 輸出시 補助金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미미한 補助만을 지급하는 國家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동북구 케언즈(Cairns)라는 도시에서 公式 結成되어 케언즈그룹이라고 함. 會員國은 호주를 위시하여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필리핀, 말레이지아, 태국, 인도네시아, 피지, 헝가리등의 14국이나 피지가 UR農產物協定에서 거의 自國의 提案을 내놓지 않은 關係로 13개국으로 보기도 함.

12)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EC共同農業政策)

域內農產物市場 安定과 農業所得增大를 위한 EC의 農業政策을 지칭하며 域內農產物保護政策과 剩餘農產物 輸出保護政策으로 대별됨.

13) Ceiling Binding(限度讓許)

未讓許 品目에 대해 現行 關稅보다 높은 稅率을 정해 그 以上으로는 올리지 않겠다고 讓許하는 것을 意味. 最近 農產物協商에서는 國內外價格差만큼의 關稅相當值보다는 낮은 세율로 讓許

한다는 意味로 同用語가 使用되고 있음.

14) Circumvention(迂迴dumping)

迂迴dumping이란 反dumping措置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輸入國의 反dumping措置를 회피하고자 完製品 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輸入國內에서組立하거나 혹은 第3國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으로서,迂迴dumping을 방지할 경우에는 反dumping措置가 사실상 그 效力を喪失하고 國際貿易秩序의 존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規制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國際社會에서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다만,迂迴dumping을過度하게 규제할 경우에는 國際間 貿易의 흐름 뿐만 아니라 각국의 海外直接投資活動을 위축시키는否定的인效果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음.

15) CL(Country List:國別 國內農業保護 및 支援措置 現況資料)

UR農產物協商그룹 議長인 De Zeeuw議長草案에 명시된 用語로서 農業補助 및 各種支援政策, 輸入規制關聯諸般政策 및 그 現況, 그리고 輸出補助 및 輸出關聯 支援措置 등 한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農業保護 및 支援措置의 現況資料를 뜻함. 이 資料는 UR協商의 基礎資料로 삼기 위하여 협상참여국 모두가 1990년 10월1일까지 GATT事務局에 제출토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1990년 10월 Country List를 提出한 바 있음.

16) Code(協定文)

→ MTN Code參照

17) Commercial Presence(商業的 駐題)

서비스 공급방법의 일종으로서 서비스가 販賣되는 場所에 現地法人, 子會社, 支店 및 대리점 등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의미함.

18) Commitment(約束)

交易自由化에 따라 각종 保護 및 支援

- 措置를 구체적으로 減縮하겠다는 約束
- 19) Compensation(補償)
한 國家가 GATT協定 第19條에 의해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를 취하거나 第28條에 의하여 讓許稅率을 引上할 경우 주요 이해 당사국에 대하여 餘他品目에 대한 關稅引下 내지 自由化 등으로서 制限措置에 상응하는 補償을 해주는 것을 뜻함.
- 20) Comperhensive Tarrification(包括的 關稅化)
例外없는 關稅화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 각종의 다양한 非關稅 障壁을 關稅形態로 統合시킨다는 概念
- 21) Consensus(滿場一致制)
GATT理事會에서 패널보고서를 採擇함에 있어서 提訴國과 被訴國을 포함한 滿場一致를 요구하는 방식임.
- 22) Concession(讓許)
→ Tariff Concession 참조
- 23) Credit(寄與實績)
UR農產物協商에서 EC 및 日本 등이 주장하고 있는 概念으로서, 農業保護 및 支援措置의 점진적 減縮에 있어서 基準年度를 UR출범년도인 1986년으로 하여 그 이후 지금까지의 自由化 履行 實績을 향후 減縮約束의 일부로 認定 받겠다는 주장
- 24) Contracting Party(締約國)
GATT加入國을 의미함. 締約國 혹은 締約國團(Contracting Parties)이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前者는 個別 締約國을 의미하고 後者는 複數의 의미로서 2개 이상의 締約國이 함께 行動할 때를 의미함.
- 25) Country Schedule 또는 National Schedule (國別 讓許表)
市場接近 및 內國民待遇에 관한 양허 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정리한 自由化計劃 日程表이며 협상에 참가한 모든 나라의 開放計劃書는 최종 협정문에 첨부될 것임.
- 26) Countervailing Duty(相計關稅)
政府의 特定產業에 대한 補助金 또는 일반적인 보조금이 國제무역의 흐름을 왜곡시켜 輸入國의 國內產業이 被害를 입을 경우, 이러한 보조금지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補助金이 지급된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特別關稅를 지칭함
- 27) Current Market Access(現行市場接近)
農產物協定上의 市場接近方式의 하나. 농산협정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이 國內消費量의 3%를 초과할 경우 현행 시장접근기회를 현행수입조건으로 보장.
- ⟨D⟩
- 28) de minimis(義務免除)
“法律은 사소한 사항에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UR協定과 관련 덤핑 및 農產物補助金 減縮義務 免除 등에 적용됨. 덤핑의 경우 덤핑마진이나 덤핑輸入量이 매우 미소하여 國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닐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農產物補助金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총생산액의 5%미만인 경우 減縮義務를 免除함.
- 29) Decoupled Income Support(生產과 連繫되지 않는 所得補助)
災害救護 및 農민 은퇴, 休耕, 투자지원 등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련된 所得補助와 같이 生產에 直接的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交易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반 政府補助措置를 뜻함.
- 30) Delayed Tarrification(關稅化 猶豫)
關稅화의 履行을 一定期間 延期한다는 意味로 農產物協定案에 의하면 例外없는 關稅화에 대한 例外로서는 두 가지

方式이 있는데 첫째는 生產統制가 되고 있는 輸入量 3% 以下, 輸出補助가 없는 品目에 대해 6年間 關稅化를 猶豫하는 대신 最小市場接近은 4~8%를 保障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開途國인 경우 上記 要件外에 傳統的 주식이 되는 品目은 猶豫期間 및 最小市場接近을 보다 有利하게 待遇해 주는 方式임.

- 31) 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優待措置)
→ Special and Diferencial Treatment
参照

- 32) Dispute Settlement(紛爭解決)
GATT상의 義務不履行으로 발생되는 紛爭의 解決을 의미, GATT상의 慣行에 따르면 의무의 위반이나 여타 紛爭의 解決手段으로서 주로 GATT規定自體에 依存하고 있으며, 강제적 수단에 대해서는 明確한 規定이 없는 것이 보통임. 구체적인 紛爭解決節次로는 GATT協定의 解釋이나 運用을 다루게 될 委員會(Panel)를 設置하여 協議를 통하여 되어 있음. 同協議에서는 無效化 또는 侵害(nullification or impairment)가 확실히 인정되면 報復이나 報償이 따르게 됨. 東京라운드에서 合意된 紛爭解olution節次는 ① 通報 ② 兩者間 ③ 제소국의 패널설치 요청 ④ 이사회의 패널설치 ⑤ 패널심사 ⑥ 보고서제출 및 채택 ⑦ 裁定 ⑧ 보복조치의 허가 등의 순서로 진행됨.

- 33) Dillon Round(딜론라운드)
1960년 5월부터 1961년 7월까지 開催된 GATT의 다섯번째 多者間 貿易協商, 당시 美國의 케네디 行政府의 國務次官이었던 Douglas Dillon의 提唱으로 개시된 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多者間協商임.

- 34) Deficiency Payment(부족불 지급)
政府에 의한 目標支持價格과 實際市場에서 형성된 價格과의 差異를 政府가 直接 보전해 주는 補償金制度

- 35) Dumping(dumping)
正常的인 가격이 하로 輸出되는 行爲. 여기서 正常價格이란 보통 國內販賣價格, 제3국 輸出價格 및 構成價格의 3 가지가 있음. 構成價格(Constructive Value)이란 반덤핑與否의 조사과정에서 國內販賣價格이나 제3국 輸出價格이 存在치 않거나 혹은 比較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되는 價格으로 生產費 + 販賣費用 + 利潤을 合算한 價格임.

- 36) Dunkel Test(던켈草案)
Dunkel 前GATT事務總長이 91년 12월 UR協商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最終協定文草案(Draft Final Act). 현행 UR協商의 틀이 되고 있음. 關稅引下, 農產物輸制限制措置를 關稅로 전환, 纖維貿易을 10년내 완전 自由化, 反덤핑 및 補助金規定明瞭化 및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교역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先進國・開途國 및 輸入國・輸出國의 利害를 고려하게 균형시키고 있음.

〈E〉

- 37) Escape Clause(免責條項)
GATT의 각종 義務로부터例外될 수 있도록 許容한 GATT條項을 뜻하고 있는데 특히 Safeguard를 취할 수 있도록 한 GATT 第19條와 각국의 國內法 關聯條項을 意味함.

- 38) Export Competition(輸出競爭)
현재 UR農產物協商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3개 議題中의 하나로 農產物 輸出 關聯 각종의 補助 및 支援措置 모두를 막라해서 이의 금지 및 減縮을 다루고 있는 分野.

- 39) External Reference Price(外部參照價格)
國內價格支持 효과나 關稅相當額(TE)을 계산할 때 基準이 되는 國際價格으로서 UR農產物 협정에서는 '86~'88 平均 世界市場價格을 基準으로 하고

있음.

40) Export Subsidy(輸出補助金)

特定商品의 輸出에 있어서 海外市場에서 해당상품의 競爭力を 強化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補助金. 현재 UR農業協商 3대 議題中의 하나인 輸出 競爭分野에서 이를 다루고 있음.

41) Enabling Clause(權能賦與條項)

東京라운드 때 합의된 4개의 國際貿易 關聯 規範중의 하나로서 開途國에 대한 特別優待 및 相互主義, 그리고 보다 많은 開途國들의 GATT協商參加를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음.

〈F〉

42) Fast Track Authority(迅速承認權限)

議會에 제출된 法案에 대해서 議會의 修正 없이 可否만 表決케 함으로써 行政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시의성 있는 審議를 保障해 주는 美國 通商法上의立法례카니즘으로서, '74년 通商法에서 최초 規定되었으며, '88년 綜合貿易法에 의해 수정・보완되었음. 이는 미국 行政政府가 외국정부와 체결한 多者・雙務間 貿易協定의 국내 시행을 위해서施行法案 제출후 60일(단, 歲入의 경우는 90일)이내에 議會가 審議를 마치도록 하고 있음.

43) FCN(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友好通商航海條約)

미국이 여러국가들(한국포함)과 雙務的으로 맺은 條約으로서 무역, 외국인 기업활동 등 모든 通商去來와 航海業에서 自國企業의 영업활동에 內國民待遇 원칙을 적용시킬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한국은 미국과 1956년 이 조약을 맺은 바 있으며 오래 전에 맺은 條約이라 그 내용이 매우 불평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4) Formula Approach(公式適用方式)

特定公式이나 引下폭을 결정하여 會員國의 모든 對象品目이나 서비스에 대

한 關稅率 및 保護程度를 일괄적으로 引下하는 방식임.

45) Freezing(自由化水準凍結)

서비스교역의 最初 自由化 約束을 위한 讓許協商方式의 한 형태로서 모든 서비스분야에 대한 최초의 自由化 약속 수준을 기준의 자유화수준에서 凍結시키는 방식임.

46) FTA(Free Trade Agreement:自由貿易協定)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나라가 地域의 聯合을 위해 서로 關稅를 撤廢하는 등 通商을 自由化하려는 協定을 말함. 미국・카나다・멕시코의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유럽自由貿易地域(EFTA), 南美自由貿易地帶(LAFTA)의 協定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G〉

47)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同協定은 무역확대를 통한 世界經濟 全體의 번영을 목적으로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調印됨으로써 발족했으며 韓國은 1967년 4월에 정식가입하였음. GATT는 相互主義 20 및 無差別主義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國內 產業의 保護는 원칙적으로 關稅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기타의 방법 특히 輸入數量制限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48) General Obligation(一般義務事項)

서비스 일반협정의 모든 참여국이 讓許協商에 의한 약속사항으로서가 아니라義務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의미. 最惠國待遇 原則, 公開의 原則등이 포함됨.

49) Generic Reservation(包括的 留保)

서비스교역의 最初 自由化約束을 위한 讓許協商方式의 한 형태로서 서비스의

特定分野에 대하여 전면적으로自由化措置를 留保하는 것을 의미함.

50) GNP(Group of Negotiation on Goods:商品協商그룹)

금번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의 실무총괄기구인 貿易協商委員會 산하에 설치된 두개의 협상그룹 중 하나로서 商品部門에 대한 協商을 총괄함. 同그룹 산하에는 9개의 협상그룹이 있으며 14개의 協商議題를 다루고 있음.

51) GNG(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서비스協商그룹)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의 총괄기구인 貿易協商委員會(TNC)傘下에 설치된 두 협상그룹 중 하나로서 서비스부분에 대한 協商을 총괄하는 그룹임.

52) Government Procurement Code(政府調達協定)

세계각국의 政府調達慣行에서 존재하는 差別行為를 規制하고 국제조달시장의 自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79년 東京라운드의 일환으로 제정한 협정으로 '87년이후 協定改正을 위한 확장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3년 가입을 목표로 현재 동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53) Graduation Concept(卒業概念)

東京라운드時 美國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주장한 論理로 開途國에서도 經濟發展水準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나라, 소위 新興工業國(NICs)에 관해서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 互惠主義에 따른 義務를 부과해야 하며 漸進的으로 貿易自由化措置를 취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概念

54) Grandfather Clause(祖父條項)

GATT가입 당시 國內法과 GATT의 諸規定이 一致하지 않을 경우 原締約國은 暫定適用議定書, GATT成立後 加入議定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條項임. 이와같이 暫定的適用에 관한 조문이 바로 GATT에 우

선한다는 뜻에서 祖父條項이라 불리며 선진국 殘滓輸入制限의 대부분이 이 條項에 根據하고 있음.

55) Green Box(許容對象補助金)

農業補助政策中 減縮對象에서 제외되는 補助金을 의미함. 農產物 協定文 草案에서는 許容補助金을 무역왜곡 효과나 生산에 미치는 효과는 없고 공개적인 정부지원계획을 통한 지원에 의하여야 하며, 價格支持效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예를 들면 食糧安保目的의 公共備蓄, 國內食糧救護, 生産에 중립적인 소득지원, 재해보상, 은퇴 또는 휴경 및 투자지원과 관련 構造調整支援, 환경 또는 지역개발지원 등이 허용보조금에 포함됨.

56) Green Room(그린룸)

GATT本部에 있는 소회의실(방의 벽지색깔이 짙은 녹색이어서 명명), 그린룸會議라고 하면 보통 각국의 協商首席代表를 1인으로 하여 重要要件을 다루는 회의이며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의제에 대한 最終討論 및 決定의 성격을 갖고 있음. GR會議는 대체로 閣僚級/高位級/實務級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政治的妥協과 決定을 요구하는 基本原則에 대해서는 閣僚級이나 高位管理級 GR會議가, 기술적 검토사항 및 이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實務級 GR회의가 열림. GR會議參加國은 주요국가로 한정되며 사무총장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GR의 座席數에 따라 20여개국 정도의 招請對象國家가 결정되나 이는 유동적임. 한 國家의 參席人員은 1+1(代表와 補佐官 각 1명)으로 한정되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2가 되기도 함.

57) Grey Area Measures(灰色規制措置)

GATT 19條의 緊急輸入規制措置 規定을迂迴하면서 自國生產을 보호하기 위하여 特定輸出國에 대하여 취하는 雙務의이고 变칙적인 수입규제로서 輸出自律規制 또는 市場秩序維持協定 등

이 대표적임.

58) Global Approach(總體的인 減縮方式)

UR農業協商에서 論議되고 있는 農業補助 및 支持水準의 감축방법의 하나로 분야별 減縮方式(Sectoral Approach)에 대응하는 개념임. 總體的 減縮方式이란 分野別 減縮方式과 달리 國內補助, 國境保護, 輸出競爭 등을 包括的 單一概念의 總 保護水準으로 파악, 이를 分류치 않고 전체적으로 保護總量만을 減縮해 나가는 接近方式이며 현재 EC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輸出國들인 美國, 케언즈그룹은 EC의 總體的 減縮方式은 그들의 輸出補助金 減縮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UR農業協商妥結의 주요쟁점이 되어 왔음.

〈H〉

59) Harmonization(關稅調和)

각 나라마다 동일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이 현격히 다른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一定한 水準의 關稅率을 기준으로 삼아 각국의 關稅率을 平準化하고자 하는 關稅引下 方式

〈I〉

60)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國際民間航空機構)

國際航空에 있어서 표준 및 과정을 발전시키고 안전보장 및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國際航空의 計劃과 發展을 촉진하기 위해서 1944년에 설립된 國제기구, 현재 會員國은 160개국임.

61) Initial Commitment(最初自由化約束)

서비스 일반협정문 체결후 진행됨. 讓許協商에 의해서 확정되어지는 각 참여국의 구체적인 最初의 市場開放 約束條項을 의미함.

62) INR(Initial Negotiation Right:最初交涉國權限)

GATT28條의 讓許撤回 재교섭시 讓許撤回國은 종래 關稅協商에서 당해 讓許稅率을 선정할 때 직접 협상을 행한 相對國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義務로서 最初交涉國에서는 權限이 됨.

63)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知的財產權)

새로운 물질, 새로운 제조기술, 새로운 용도 등의 發明과 새로운 상품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개발, 상품의 상징 표시선정 등과 같은 產業的 發明과 새로운 문학, 미술, 음악작품의 著作과 새로운 연출, 공연 제작 및 방송 등의 文藝的 創作에 대한 排他的 所有權을 충칭함.

64) ITCB(International Textiles & Clothing Bureau:國際纖維局)

1984년 5月, MFA運用에 대한 협의 검토 및 會員國 支援을 目的으로 설립된 섬유 수출국 정부간 협의체로 현재 22개 개도국이 가입(韓國은 1984년 7월에 참여)되어 있으며 우루파이라운드 纖維協商에서 會員國들은 單一案 提出 등 공동대처하고 있음.

〈K〉

65) Kennedy Round(케네디라운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開催되었던 GATT의 第6次 多者間 무역協商, 케네디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개시되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명명되었으며 동 多者間 協商에서는 工產品 平均 關稅의 35% 引下, 反덤핑 協定文 制定 등의 合意를 導出하였음.

〈M〉

66) Market Access(市場接近)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需要하는 市場에 接近할 수 있는 權利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67) MFA(Multi—Fiber Arrangements:多者間纖維協定)

1974년 체결된 纖維類交易에 대한 國際協約으로 3회 연장을 거쳐 현재 MFA IV(1986년 8월~1991년 7월)에 이름. 수출국과 수입국간 雙務協商을 통하여 交易量을 제한하고 수입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개도국 수출에 대한 先進國의 規制手段으로 활용됨.

68) MFN Treatment(Most—Favorable—Nation Treatment:最惠國待遇)

일명 無差別原則이라고도 하여 通商關係 및 관세부여에 있어서 第3國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待遇를 다른 국가들에게도 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임.

69) Minimum Market Access(最小市場接近)

農產物協定上의 市場接近方式의 하나. 農產物協定에 따르면 特定품목의 수입이 國內消費量의 3% 미만일 경우 UR이 행기간내에 시장접근기회를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最小市場接近物量에 대해서는 現行稅率을 適用

70) Modulated Consensus(緩和된 滿場一致制)

이번 UR의 紛爭解決節次에서 미국과 호주가 提案한 제도로서 패널 提訴國과 被訴國等 當事國을 제외한 滿場一致制를 말함.

71) MTN Code(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Code:多者間貿易協商코드)

東京라운드에서 체결된 反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정부조달,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 등 6개의 비관세분야와 낙농, 쇠고기, 민간항공기 등 3개의 商品關聯分野의 多者間 協定을 총칭함.

72)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多者間貿易機構)

GATT機能強化를 위해 1990년 캐나다

와 EC가 제안. 이번 UR協商結果 GATT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인 MTO가 正式發足됨. MTO는 現行 GATT와는 달리 ① 法的拘束力이 강한 權限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② 별도의 國際機構形態로 설치되며 ③ 意思決定도 多數決로 이루어짐.

73) Multilateral Megotiation(多者間協商)

通商協商方式의 하나, 通商問題를 兩者間 解決하는 雙務協商과는 달리 UR 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同時에 協商을 進行하는 方式

⟨N⟩

74) National Treatment(內國民待遇)

外國商品(서비스) 및 상품(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국내상품(서비스) 및 상품(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待遇나 동등한 機會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75) Negative System(네가티브시스템)

漸進的 自由化 推進方式의 하나로 개방이 불가능한 부문이나 사항만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부문이나 사항은 자동적으로 開放되는 방식임.

76) NTB(Non—Tariff Barriers:非關稅障壁)

關稅以外의 貿易障壁을 의미하는데 ① 貿易을 直接的으로 制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非關稅障壁(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할당 등) ② 間接的으로 貿易制限效果를 갖는 非關稅障壁(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음.

77) NTC(Non—Trade Concerns:非交易的考慮要素)

농업은 經濟的 役割뿐 아니라 食糧安保, 社會安保, 就傭擴大, 環境保全 등 非經濟的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같은 농업고유의 기능을 총칭하여 NTC라 일컬음.

〈O〉

78) OECD Code(OECD自由化規約)

OECD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自由化項目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서비스交易의 自由化對象項目으로 구성된 經常貿易外去來自由化規約과 國家間資本移動의 자유화 대상항목으로 구성된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이 있음.

79) Offer List(오퍼리스트)

관세, 비관세, 热帶產業, 天然資源, 농업 등 시장개방분야의 협상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市場開放計劃書를 지칭함.

〈P〉

80) Panel(패널)

GATT締約國間의 紛爭解決을 위하여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3~5명으로 구성하며 作業參考事項(terms of reference)에 따라 報告書를 작성하여 理事會에 提出함.

81) Peace Clause(平和條項)

農產物協定草案 12條의 내용으로서 국내 및 수출보조 감축이 동 협정초안의 조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는 동 協定履行期間(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동안 補助金規定에 의한規制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EC는 미국에 동 조항의 적용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93. 12월 초 협상에서 3년을 더 연장받기로 알려짐.

82) Positive System(포지티브 시스템)

漸進的自由化推進方式의 하나로서 개방이 가능한 부문 및 사항만을 열거하고 점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開放可能한 부문 및 사항을 擴大해 나가는 방식임.

83) Punta del Este Declaration(푼타델 에스테 閣僚宣言)

UR協商開始를 宣言한 閣僚宣言. 우루과이 푸ن타델 에스테에서 지난 1986년 9월에 있었음.

84) Protocol(議定書)

UR協商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협상결과와 동 협상결과를 구체화시키는義務를 賦與하는 규정으로서 協定文, 決定文, 諒解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85) PSI(Preshipment Inspection:船積前検査)

수출국이 상품을 수출하기 전에 船積前檢查機關이 동상품의 수출국내에서 동상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을 검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선진국의 檢查機關의 橫暴로 개도국의 수출자와 분쟁이 잦아 UR協商에서는 船積前検査에 관한 紛爭解決節次를 보다 明瞭化하였음.

〈Q〉

86) QR(Quantitative Restriction:數量制限)

輸入이나 輸出의 경우 直接的으로 數量의 정도를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수입 또는 수출을 허용하는 貿易制限措置의 하나. 貿易制限의 형태중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市場機能과는 전혀 무관한 인위적 조치라고 할 수 있음. 전형적인 數量制限의 方法으로는 輸入割當(Quota), 輸入許可 및 輸入禁止, 輸入機關의 指定등이 있음.

87) Quad(主要4國)

UR協商을 주도하고 있는 主要國家를 지칭하며 美國・EC・일본・캐나다를 포함.

88) Quota(輸入割當)

特定商品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數量(價格)만큼만을 輸入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行政命令으로서 그 한도를 넘어선 輸入은 어떠한價格하에서라도 금지되는 數量制限의 대표적措置. 그種類에는 總量쿼타(Global Quota), 雙務쿼타(Bilateral

Quota), 그리고 關稅割當(Tariff Quota) 등이 있음.

〈R〉

89) Rebalancing(關稅率 再調整)

EC의 關稅化 受容의 前提條件으로서 기존의 EC가 油脂類 등 몇몇 품목에 대하여 無稅 또는 低稅率로 GATT에 讓許해 놓은 것을 撤回・再調整하겠다는 주장

90) Reciprocity(相互主義)

GATT基本原則의 하나로서 GATT締約國이 貿易自由化措置를 취할 경우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동措置를 相互交換한다는 주의로 互惠主義라고도 함. 이러한 상호주의의 예외로서 開途國들에 대하여서는 상호주의를 要求하지 않는다는 GATT協定文 제4부 開途國條項(第37條)이 있으나 최근들어 先進國들이 開途國의 經濟發展段階에 따라 이에 상응한 市場開放 등 國제무역상의 義務를 遵守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음.

91) Reduction Target(減縮目標)

UR農產物協商에서 論議되고 있는 國內補助 및 關稅相當額, 輸出補助 등의 減縮目標 즉, 바꾸어 말하면 합의될 기간 동안의 減縮해야 될 減縮水準을 의미함. UR農產物協定에 따르면 關稅 및 關稅相當值는 6년간 36%(개도국은 10년간 24%), 國내보조금의 경우 20%(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출보조금의 경우 재정지출 36%(개도국 24%), 수출물량 21%(개도국 7%)로 규정되고 있음. 특히 수출보조를 받는 물량은 농산물 협상타결의 최대쟁점으로서 당초 24%였으며 블레어하우스에서 21%로 하향조정되었고 다시 1993. 12 미·EC간 합의에 의해 재고물량을 제외하게 되었음.

92) Request & Offer(R/O:市場開放要請 및 提案方式)

특히 讓許協商에 있어서 個別國家끼리 관심있는 品目을 上호제시하여 品目별로 關稅率 引下나 개방정도를 협상하는 방식

93) Request List(市場開放要求書)

R/O방식에 따라 提出하게 되는 상대국 가에 대한 關稅率引下내지 開放要求 등의 自由化 事項 要求書

94) Retaliation(報復)

한 締約國이 취한 관세인상 또는 기타 貿易制限措置로 인해 被害를 입은 他 締約國이 취하는 對應措置로서 GATT23條는 兩國이 협의에 실패했을 경우에 한해 報復措置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95) Residual Restriction(殘存輸入制限)

GATT상 위법인 輸入制限措置. 대부분의 先進國에 있어서 GATT加入後 기존의 輸入制限措置를 緩和키로 잠정 협정 의정서나 또는 가입의정서 상에서 約束해 놓고 현재까지 자유화하지 않은 品目이 상당히 存在함. 이러한 品目을 소위 殘存輸入制限品目이라고 하는데 GATT의 特定 對象國이 異議提起를 않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默認되고 있는 輸入制限措置라고 할 수 있음.

96) Rollback(規制撤廢)

GATT에 위배되는 현존 規制措置를 철폐하거나 GATT에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함.

97) Rolle Group(롤그룹)

서비스협상을 실제적으로 주도하는 美國, EC, 日本, 韓國 등 16개 협상국으로 구성된 서비스협상의 非公式會議 그룹 명칭임.

98) Rules of Origin(原產地 規定)

輸入物品의 生產國을 판정하는 기준, 절차, 증빙서류 및 그 관리에 관한 규정 Safeguards(緊急輸入制限措置)特定商品이나 서비스의 수입금증으로 인하여 國내관련산업이나 서비스공급자가

심각한被害를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산업이나 서비스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输入制限措置를 의미함.

〈s〉

- 99) Safeguard(緊急輸入制限措置:세이프가드)
特定商品의 输入急增으로 인하여 國內關聯產業이나 직접 경쟁되는 산품의 國內生產業者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該當產業이나 國내 生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輸入制限措置. GATT 第19條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취할 경우 關聯 締約國에 補償의 義務가 주어져 있음.

- 100) Selectivity(選別性)

제한된 소수의 輸出國들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이것이 輸入國 國內產業에 대한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이 국가들에 대해 選別的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 101) Shadow Tariff Reduction(潛在된 關稅減縮)

關稅化 適用이 안되는期間 동안에도 關稅相當值(T.E)는 協定文에 規定된 대로 減縮되어 關稅化가始作될 때는最初 關稅相當值에서 品目當 最下 減縮率(先進國 15%, 開途國 10%)을削減한 水準이 됨.

- 102) Single Undertaking(一括受諾原則)

UR協定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UR協定文에 서명하는 경우 UR협정문 및 부속문서를 전체적으로 수락하는 원칙. 따라서 일부 수락은 불가능하며 어느條項에 대해서도 留保를 행할 수 없음.

- 103) Special Safeguard(特別세이프가드)

關稅化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關稅相當額(TE) 減縮履行過程에서 世

界市場價格의 急激한 變動 또는 輸入急增(import surge)時 關稅引上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緊急救濟措置(기존의 GATT第19條 Safeguard條項과 無關). 農業協商에서 論議되고 있는 特別세이프가드는 관세인상만을 허용하되 相對締約國에 홍보할 의무는 있으나 보상의무는 免除됨. 발동요건은 輸入物量基準과 輸入價格基準 두 가지가 있음.

(i) 輸入物量基準(Volume-based Safeguards): 特定商品의 수입이 關稅割當額(TQ)을 초과하여 급격히 증가해 수입국에 위급한 輸入水準(trigger level)일 경우 전년도 關稅相當額(TE)水準으로까지만 關稅引上(Tariff Increase)許容

(ii) 輸入價格基準(Price-based Safeguards): 일정시점에 있어서 한商品의 世界市場價格과 과거 대표적 기간의 價格과의 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 輸入國의 위급한 價格水準(Trigger-Price)일 경우 전년도 關稅相當額(EC) 水準으로까지만 關稅引上 許容

- 104)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

ns:衛生 및 檢疫規定)

GATT의 일반적例外規定의 하나로서 제20조(B항)을 의미함. GATT 제20조(b)는 人間 및 動・植物의 生命 또는 健康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採擇・實施함에 있어서 GATT의 어떠한 규정도 이를 저해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국은 동條項을 惡用, 輸入制限措置로 빈번히 이용해 온 바 현재 UR農業協商에서는 동條項의 貿易障壁으로서의 惡用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論議가 진행중이며, 상당한 정도의 의견의 일치를 보여 農業協商內에서 가장 協商進行速度가 빠른 議題임.

- 105)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特別

待遇)

보통 開途國들에 GATT義務를 免除 또는 緩和시켜 주는 것과 같은 開途國에 대한 特別한 優待措置를 뜻함.

106) Specific Duties(從量稅)

수입물품의 수량을 課稅의 標準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이르며, 그 개수, 수량, 길이, 용적 혹은 면적을 과세산정의 기준으로 함. 從量稅의 장점은 從量稅처럼 가격에 대하여 복잡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고 과세방법이 간편하고 명확하여 行政上 便利하다는 점이며. 단점은 과세의 公評性이 결여되어 있고 財政收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 關稅率表上 從量稅 품목은 HS3706(영화용 필름)과 HS8524(내용이 수록된 비디오 테이프) 등 2개 품목임.

107) Standstill(現狀凍結)

모든 會員國이 GATT加入과 동시에 GATT協定에 일치하지 않는 貿易制限措置를 導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칭함.

108) State Trading Enter Prises(國營貿易企業)

무역을 國家가 統制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國家財政 및 安保, 공공 위생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國內消費者나 소규모 生產者の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家가 運營하는 企業. GATT第17條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음.

109) Subsidies(補助金)

輸出增大 또는 輸入減少의 효과를 갖는 모든 支援金, 즉 奨勵金, 金融支援(低利融資), 稅制支援(租稅減免, 蕩減) 및 社會福祉 支援金 등을 의미함. 國內生產에 대한 補助金을 國內補助金(Domestic Subsidy), 輸出增大와 關聯된 補助金을 輸出補助金(Export Subsidy)이라고 함.

110) Sensitive Clause(削減條項)

수입국이 反덤핑關稅를 賦課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反덤핑關稅가 종료되도록 하는 구조으로서 UR反덤핑協定案은 反덤핑關稅賦課日이나 덤피 및 被害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재심일로부터 5년이내에 반덤핑조치가 자동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있음.

111) Supply Management System(農產物生產統制制度)

農產物 生產을 規制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GATT規定(11조2항C)으로서 각국의 농산물 수입제한을 위해 광범위하게 원용되어 음으로써 農產物의 자유로운 交易을 크게 제한하게 되었음. 農產物協定草案은 生產 통제에 의한 수입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모두 關稅化의 對象이 됨.

〈T〉

112) Technical Barriers(技術障壁)

非關稅障壁의 일종으로서 수입제한을 초래하는 各種 工產品의 規格이나 安全規程 등을 의미함. 이러한 技術障壁의 除去를 목적으로 동경라운드에서 “商品標準에 의한 協約”이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 1980년 9월에 가입하였음.

113) Tariff Concession(關稅讓許)

국가간의 關稅·貿易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約束. 關稅讓許에는 3가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① 現行稅率을 引下하는 關稅引下(Reduction), ② 관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据置(Binding), ③ 현행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限度讓許(Ceiling binding) 등이 있음. 關稅讓許의 결과는 당해 국가의 關稅讓許表(Tariff Schedule) 형태로 협정문에 부속시키며, 일단 관세양허된 품목의 세율은 협상상

대국과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114) Tariff Escalation(가공도별 稅率隔差)

商品의 가공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關稅構造. 즉, 原料品의 關稅率은 無稅 또는 低稅率로 하고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高關稅率로 하는 관세의 경사구조를 뜻함. 이는 資源輸入國의 가공산업을 保護하는 한편, 資源輸出國의 가공업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갖고 있음.

115) Tariff Increase(關稅引上)

輸入되는 商品의 關稅率을 引上시키는 것으로 特定商品의 輸入을 規制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GATT에 讓許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 輸入國이 自意적으로 關稅率을 인상할 수 있으나, 許된 品目의 경우는 Safegurd나 당초 關稅引下交涉 相對國 및 주요 이해관계국들과의 재협상을 통해 결정함.

116) Tarification(關稅化)

關稅 以外의 각종 非關稅措置를 關稅의 形態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美國이 최초로 제안했음. 農產物 交易自由化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UR農業協商의 3대 議題 중의 하나인 國境保護部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原則的인 선에서 關稅化에는 각국이 대체적인 의견 接近을 보았음. 關稅化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종의 非關稅化措置에 기인하여 발생한 國內外價格差에 근거하여 關稅相當額을 計測하고 이를 향후 합의된 기간에 점진적으로 減縮해 나간다는 것임.

117) TE(Tariff Equivalent: 關稅相當額)

關稅化的 구체적 방안으로서 國內外價格差에 근거하여 계산함.

$$TE = \frac{P_d - P_w}{P_w} \times 100$$

단, Pd: 國內價格 Pw: 國際價格

非關稅措置의 관세로의 전환시 同 關

稅相當額을 關稅로 부과하게 되며 향후 합의된 기간동안에 합의된 수준으로 減縮해 나감. 이 경우 초기 또는 최초 關稅相當額(Initial TE)이란 TE를 計算한 最初年度의 TE를 의미함.

118) Tariff Peaks(高關稅)

주요 선진국들이 섬유와 신발류 등 特定分野의 輸入品에 대해 부과하는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지칭하며, 예로서 미국의 경우 平均關稅率 수준은 3.5%에 불과한 반면, 의류, 섬유류 등의 경우 각각 1.8%, 12.1%의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先進國들이 高關稅로 분류하고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開途國들의 主宗 輸出品이라는 점에서 이는 개도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

119) 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 貿易交涉委員會)

UR閣僚級 議決機構. 현재 UR협상체계를 보면 貿易交涉委員會 산하에 크게 商品協商그룹(GNS)과 서비스협상그룹(GNS)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편 갑시기구를 設置하여 GATT에 위배되는 기존의 措置들을凍結, 撤廢하겠다는 閣僚會議 合意事項 履行與否를 감시하고 있음. 商品協商그룹은 다시 市場開放分野, GATT規律分野, 新商品分野 등으로 나뉘어 14개 細部協商그룹이 있으며 서비스협상그룹은 商品協商그룹과 별도로 서비스교역에 관한 國際規範定立에 주력하고 있음. 각 그룹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TNC會議에 상정되고 TNC會議에서는 각 協商그룹에서 올라온 결과를 놓고 그룹간의 조정을 통해 最終意思를 결정하는 최고의 결기구 역할을 수행함.

120) Tariff Quota(關稅割當)

特定品의 輸入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低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數量에 대해서는 高率의 關稅를 부과하여 輸入數量의 과도한 增加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사품의 國內 生產者를 保護하고자 하는 이중 관세을 제도임. 현재 UR農業協商에서는 關稅化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關稅相當額과 關稅割當 2가지 方法이 거론되고 있음. 이 경우 關稅割當은 현 輸入水準을 보장하기 위한 措置로 파악할 수 있는데 關稅割當量 만큼은 國內外 價格差에 근거한 關稅相當額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121) Tokyo Round(동경라운드)

1973~1979년까지 개최된 GATT상의 7번째 多者間交易協商

동경라운드에서는 과거의 다자간 협상과 달리 關稅以外에 非關稅障壁의 自由化도 다루어졌으며, 그 결과 工產品의 關稅率을 1987년까지 평균 33% 낮추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덤핑, 상계관세, 技術障壁과 같은 非關稅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122) Transparency(公開主義)

商品 또는 서비스 등의 교역과 관련된 모든 規制措置는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명료하게 공개, 공표되거나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임.

123)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貿易關聯投資措置)

外國人投資와 관련하여 貿易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歪曲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規制나 인센티브提供措置를 칭함. 주로 고려대상은 投資履行要件으로 대표적 예는 국산부품사용의무와 수출이행 의무이며, 이 밖에도 판매시장 지정, 특정제품제조, 외화통제, 貿易收支均衡을 위한 企業活動制限, 技術移轉 義務 등이 있음.

124)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偽造商品을 포함한 貿易關聯 知的財產權)

우루과이라운드 知的財產權 협상그룹

의 公式名稱(약칭)으로 同 협상그룹을 일명 TRIPs그룹이라 부름.

125) Trigger Price(基準價格)

特定商品이 일정가격 수준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덤핑防止關稅를 부과하기 위해 이용되는 基準價格. 현재 UR農業協商에서는 關稅化에 따른 보완장치로서 特別救濟制度(Special Safeguard)를 論議하고 있는데 동 구제제도의 발동요건 기준이 되는 輸入國에 위급한 輸入價格水準

126) Two-tier Approach(差別適用)

미국이 Rgle法案 制定을 통해 미국의 기존자유화 조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하다 新規・追加로 讓許하는 조치는 金融市場開放이 미흡한 나라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특히 金融開放이 不振한 일본, 우리나라, 대만,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金融市場개방을 겨냥하고 있음.

⟨U⟩

127) Uruguay Round(우루과이라운드)

세계각국의 關稅・非關稅障壁을 철폐하기 위해 GATT에서 진행되는 제8차 多者間 貿易協商, ① 각국의 市場開放擴大 ② GATT체계 強化 ③ 서비스, 知的財產權, 貿易關稅投資 등 신분야에 대한 國際規範 마련을 목표로 86년 9월 116개국이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시작. 출범당시에는 90년 말을 협상시한으로 했으나 2차례에 걸친 연장끝에 93년 12월 15일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

128) VERs(Voluntary Export Restraints:輸出自律制度)

輸入國의 輸入制限措置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국 스스로 輸入物量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美國, EC 등 선진국들이 주로 新興工業國들의 주종 수출품목인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신발 등에 대해서 兩者間協商

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 19條 緊急輸入制限措置를 회피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W〉

129) Waiver(免除)

GATT에 規定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 상황하에서 GATT 締約國團이 投票의 2/3찬성(전체투표의 過半數이어야 함)으로써 範圍 및 基準을 정하여 어떤 加入國의 特定GATT規定 遵守義務를 免除하여 주는 것을 말함. 미국의 경우 1948년 農業調整法 第22條와 GATT條項과의 摩擦을 최소한으로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GATT I, XI條에 대한 義務免除을 획득한 바 있음. 금번 UR協商에서 미국은 자국이 既獲得한 Waiver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農產物 貿易自由化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130)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

nization:世界知的所有權機構)

同機構는 1967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特許權・意匠權・商品權 등의 生產財產權과 著作權의 國際的 보호를 위한 國際協約들의 共同事務局 성격으로 출범하여 1974년 UN의 전문 기구로 격상된 知的財產權의 國際的 보호기구임. 1993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33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됨.

〈Z〉

131) Zero for Zero(無稅化)

UR協商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서 特定產業分野에 있어서는 關稅를 철폐하자는 案임. 현재 無稅化 提案과 관련해서 UR協商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며, 無稅化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수산물, 목재류, 종이, 철강, 전자(컴퓨터 포함), 건설장비, 비철금속, 의약품, 맥주 등 9개분야임.